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8. 17 선고 2020가단843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서

변 론 종 결 2021. 6. 22.

판 결 선 고 2021. 8. 1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91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11. 8.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2013년 9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.

나. 2014. 11. 7.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(다음부터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에 관하여 2014. 8.

27.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/2 지분씩 원고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가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는 지속적으로 공동명의를 요청하였다. 이에 원고는 부득이 혼인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/2 지분을 명의신탁해주었는데, 피고가 위와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명의신탁 약정은 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무효이므로, 결국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중 91,500,000원(= 전체 매수자금 183,000,000원 × 1/2)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는 위와 같은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, 관련 매매계약서, 잔금 지급 영수증(갑 제1 내지 4호증)만을 제출하고 있는데,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영순